

Issue Brief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No.67]

발행처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발행일 : 2022. 12. 16 | 발행인 : 민무숙

여성의 삶을 통해 본 4·3의 의미와 과제¹⁾

강 경 숙 연구위원

1. 들어가며

- 지난 2022년 11월 7일, 4·3²⁾ 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금이 처음으로 지급되었다. 이는 지난 2021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의 전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를 통해 4·3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한 규정과 국가의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1) 본 연구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근현대 제주여성구술사 I - 4·3 이후 제주 여성의 노동과 삶」 연구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이 연구는 '4·3 유족 1세대 여성' 12명에 대한 구술 면접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2) 그동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웠던 4·3은 '제주4·3특별법'을 통해 '제주4·3사건'으로 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4·3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그동안 4·3은 '사건' 이외에도 '항쟁', '폭동', '무장 봉기', '민중 수난', '양민 학살', '사태', '반란' 등 한국사회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인식 주체의 역사적 관점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어왔다(고성만, 2005:1). 한편, 지금까지도 4·3의 정명(正名)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이다



- 이로 인해 4·3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지만, 보상의 대상이 되는 유족의 범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실질적으로는 유족이지만 당시 관습과 사회분위기 등으로 인해 희생자의 자녀로 등재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4·3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도적 차원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제주4·3희생자유족회, 2021)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 본 연구는 4·3 희생자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당시, 호적³⁾) 불일치 사례의 다수가 여성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루어졌다. 지난 2021년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서 실시한 「제주4·3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부 불일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사례 78건 중 여성이 76.9%(78명 중 60명)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4·3희생자유족회, 2021)
- 이러한 사실은 4·3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미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4·3뿐만 아니라 4·3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적 맥락에 의해 또 다른 피해를 경험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 이후 성비불균형 사회에서 제주 여성들의 노동과 연대는 가족과 마을의 재건에 중요한 기반이 되어주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해방 이후 제주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여성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4·3의 온전한 역사' 정립에 기여하고 아울러 4·3의 보상과 명예 회복을 넘어 보편적 가치로서 4·3의 의미와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2. 4·3 전후 제주 사회와 여성의 지위

■ 제주도의 성별 분리 체계와 여성의 지위

- 공(公)-사(私)로 구분되는 근대적 성별 분리 체계와는 달리 제주도의 전통적인 성별 분리 체계는 각각 의례와 노동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의례는 남성의 영역, 노동(가족)은 여성의 영역이었다(김효선, 2007:68). 그러나 이 양 영역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의례의 영역이 노동의 영역보다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 제주도의 전통적인 성별 분리 체계의 기원은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근대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볼 수 있다. 제주 사회에 '역척스럽게 일하는 제주여성'과 '남자는 귀한 존재 = 상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성별 분리 의식이 뿌리내리게 된 계기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국가에서 의무로 강제된 공노동의 결과에 기인한 남성에 대한 인적 손실이 직접적인 원인이었고, 또 하나는 유배에 따라 유입된 양반 계급과 양반 문화가 못지않게 큰 영향을 미쳤다(한림화, 2015). 아울러 4·3으로 인한 남성 인구의 손실은 노동과 가족 영역에서의 남성 역할의 부재와 남성의 지위 강화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같은 시기 제주 여성의 노동 역할은 강화되었지만, 이는 제주의 전통적인 성별 분리 체계에 기반한 가족 및 공동체 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여성의 지위를 높이지는 못했다

3) 호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는 국가가 자국민을 파악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신분등록 제도의 일종이다. 이러한 호적법은 호주제도와 함께 부계 혈통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제도라는 점에서 변화의 필요성이 컸다(이재경, 2003). 이에 따라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한국의 가족법은 2008년 1월 1일자로 폐지되었고 현재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 제주도의 가족제도와 여성의 지위

- 4·3으로 인한 성별 불균형 사회에서 남성의 지위는 더욱 강화되었고, 집안의 남성의 역할을 위해 양자제도가 보편적으로 시행되었다. 4·3 이후 양자를 들이는 이유 중 하나는 제사 봉양의 의미가 컸다. 제주 사람들은 성별을 떠나 사후 제사 봉양에 대한 의식이 컸기 때문에 여성들도 가족의 재건을 위하여 양자들이기에 적극적이었다. 홀어머님만 아니라 딸이 결혼한 후에도 친정의 대를 잇기 위해 양자(형제) 들이기를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
- 그러나 양자제도는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었다.⁴⁾ 무엇보다 양자제도의 주목적은 제례를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재산의 이동이 필요했다. 한편, 구술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양자들은 양자로 간 집안의 재산을 받았지만 실제 제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 이처럼 4·3 전후 남성들은 가족과 친족, 지역 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반면, 여성들은 출생 신고도 되지 않고 오랫동안 무호적 또는 다른 가족의 호적에 등재된 상태에서 살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남 아들은 양자로 가든 어떤 방식으로라도 가족관계에 등록되었지만, 여아들은 그렇지 못했다. 반대로 딸만 있는 집안에서는 자녀의 호적을 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했다
- 이러한 문제는 유족에 대한 인정과 피해 보상을 넘어서, 여성들의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잃고 더 나아가서는 살아온 삶과 존재의 부정을 의미하였다(제주 4·3연구소, 2019).⁵⁾ 이런 의미에서 제주 여성들에게 호적은 차별과 권리 모두를 포함하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호적은 부계 혈통 중심의 제도로 여성들을 배제한다는 의미에서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제도였지만, 이 시대 여성들이 자신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때문이다

■ 여성의 교육 기회 배제

- 4·3은 여성들의 교육이 단절되는 원인이 되었다. 4·3 전후 태어난 제주 여성들은 호적이 없어 학업이나 취업에 제약을 받았고, 어려운 가정 형편과 가족의 생계 부양을 위해 교육의 기회를 포기해야 했다. 게다가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문화로 인해 여자라는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 4·3 이후 지역개발과 산업화 초기에도 제주 여성에 대한 공교육의 기회는 차별적으로 제공되었다. 제주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1960년대 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급격한 차이(전체 5,894명 중 남성 60.7%, 여성 39.3%)가 나타나고 있다(양시연, 2004:20)

4) 현재, '4·3과 양자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 조사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어린 나이에 양자가 되어 고생한 사례도 있다. 향후 양자 당사자(남성)의 경험과 목소리가 드러날 수 있는 조사와 연구 또한 필요하다

5) 이에 대해서는 제주 4·3연구소 「4·3생활사총서 I - 4·3과 여성, 그 살아낸 날들의 기록」 중 <강속자>의 사례에 잘 나타나 있다. 1938년 봉개에서 태어난 강속자는 4·3으로 아버지를 잃고 호적 없이 지내다가 친척의 호적에 입적이 된다. 그러나 강속자의 어머니는 남편과 같은 호적을 갖지 못한 자신을 “호 없으면 살아도 헛사는 사람”이라 표현한다. 강속자는 해녀 물질로 집 3채를 사는 등 가계를 일으키고 재건하였지만, 평생의 관심은 호적이었고 실제 가족의 호적에 입적 되지 못한 것을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 여겼다



실제 제주 여성의 생애사 연구를 살펴보면, 1960년대 제주 여성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보통교육을 받기 시작하였음에도 중고교의 진학은 어려웠다. 다른 남자 형제와는 달리 이들은 부모를 도와 밭일을 하거나 어린 동생을 돌보는 등의 사유로 상급학교의 진학이 이뤄지지 못했다. 한편, 1960년대 출생하여 1970년대~1980년대 청소년기를 보낸 여성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또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강경숙·안미정, 2015)

■ 마을 권력구조의 변화

- 4·3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및 제주 사회의 변화 속에서 마을 내 질서 또한 재편될 수밖에 없었으며, 불타버린 마을에서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체적 힘이 필요해 남성 노동력을 빌려야 했다. 그러나 성비 불균형이 극심했던 마을에서 살아남은 남성들과 흠어멍들이 맺었던 수놓음은 차등적으로 이루어졌다. 남성들은 여성들과의 수놓음을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충당할 수 있었지만, 여성들은 남성 노동력을 빌린 값을 갚느라 정작 자신의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기도 했다(이정주, 1999:98~99).⁶⁾
- 또한 근대교육을 받지 못했던 여성들은 은행 이용, 관 상대의 보조금 요구 등을 이행하기 어려웠다 반면 남성은 면사무소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거나 대출을 받아 큰 규모의 장사, 목축을 시작해 재산을 축적하기 쉬웠다. 민보단장, 특공대장, 복구위원장, 재건위원장 등 공식적 지위를 통해 정치적 권력을 획득했으며 몇몇 남성들은 이 위치를 이용해 국회의원, 면장(현재 읍장)으로 진출하기도 했다
- 이러한 여성과 남성이 갖는 위치와 경험 차이는 성별에 따른 경제적 격차를 초래했다(이정주, 1999; 권귀숙, 2011; 한림화, 2018). 4·3 당시 살아남은 성인 남성들이 마을 행정이나 마을 경제에서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행사하였고, 1980년대 이후에는 4·3 때 10세 이하의 어린아이였던 남성들이 마을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하였다(이정주, 1999:118~119). 이는 4·3 당시 비슷한 나이였던 본 연구의 구술자들과는 비교해 보았을 때도 4·3 이후 성별 간의 권력과 지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제주 마을의 남성 중심의 권력구조는 세대를 넘어 지속되었다. 마을의 리더는 항상 남성이었으며, 4·3 당시 살아남은 소수의 성인 남성에서 지역개발기 성인으로 성장한 남성들로 계승되었다. 이러한 영향을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4·3 이후 마을 재건과 함께 당제와 포제와 같은 공동체 의례가 복구되었고, 1991년 지방자치제 이후 마을 단위의 의례가 더욱 정교해져 남성 권력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기제로써 작동하게 되었다. 제주도의 각 마을에서 진행되는 축제, 체육대회, 마을제(포제) 등을 통해 남성들의 가부장적 연대를 공고히 하고 있다(김효선, 2007:69).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는 제주의 권당문화는 남성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사회활동, 개인적 사업 등에 활용되는 등 남성 중심적 연대와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확장되고 있다(이해응 외, 2021)

6) 한 마을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남자가 있는 집에 가서 소와 남성 노동력을 빌리면 5일 동안 그 집 밭일을 해 주든지, 아니면 5명의 여성이 그 집 밭일을 하루 해 주어야 '수놓음' 값을 물 수 있었다고 한다. 남성 노동력을 여성 노동력의 5배로 친 셈이다. 또한 여성노동과 남성노동을 교환할 때 그 결정권은 남성에게 있었다(김성례 외, 2001)

3. 4·3 이후 제주 여성의 생계 및 재건 활동

■ 마을의 재건 활동

- 1950년대 초 4·3의 연장선상에서 예비검속으로 많은 사람이 죽음을 겪는 와중에도 제주도민들은 성담 보초와 전쟁에 동원되어야 했다. 특히, 주민에 대한 집단 학살과 초토화 작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해안마을에는 축성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산사람’들을 막는다는 이유로 ‘전략촌’의 성담을 쌓는 작업이나 보초서기 등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도민들은 만리장성을 연상케 할 정도로 엄청난 작업에 동원되어야 했으며, 특히 젊은 남성들이 도피하거나 부재한 상황에서 주로 여성과 노인, 어린이 등이 노역에 시달렸다(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314)
- 제주 청년들에게 전쟁 참여는 ‘빨갱이’라는 낙인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육군과 해병대에 입대해 참전한 제주 청년들은 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여성 126명도 해병대에 지원하여 참전하였다(박찬식, 2010:93~95). 당시, 4·3과 전쟁으로 청년들이 부족하자, 15세 이상 30세까지의 여성들도 징발하여 훈련을 시켰다. 마을마다 축성한 방어시설의 보초 임무는 전적으로 여성들의 몫이었는데, 4명이 교대로 밤을 새우며 성담 망루대에서 근무했다(박찬식, 2010:91)
- 4·3 재건기 살아남은 사람들의 협동과 연대는 가족의 생존과 마을 재건을 위해 필수적이었다. 특히, 4·3 이후 ‘여다의 섬’ 제주에서 여성들의 연대는 제주 사회를 재건하는 기반으로, 세대를 넘어 가족과 친족, 마을 단위로 이루어졌다. 제주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친정식구 및 마을 여성들과 서로 협동하는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여성들의 푼돈을 목돈으로 만드는 계(契)는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집안의 상례와 혼례가 있을 때 며칠에 걸쳐 많은 음식을 준비해 서로 나눠 먹었으며, 또 이를 준비하는데 서로의 힘을 보태곤 하였다(강경숙·안미정, 2015)

■ 돌봄 노동: 돌봄, 치유, 명예 회복

- 4·3 전후 제주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동생이나 아픈 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도맡아 하였다. 생계부양자인 어머니를 도와 어린 동생들의 부모 역할을 해야 했으며, 남의 집의 ‘애기업개’나 ‘식모’로도 많이 갔다. 이는 어려운 살림살이에 입 하나를 덜어주는 일이기도 하였다
- 4·3 이후 제주 여성들은 서로 함께 일하고 돌보았고 상처를 치유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갔다. 구술자들은 4·3 발발 당시 10세 전후의 어린나이에, 자신을 포함한 가족 전체가 학살의 대상자이거나 아버지와 오빠 등 남성 혈족이 부재한 상황에서 홀로 남은 어머니에게 가해진 폭력과 후유증을 지켜봤고 생존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해왔다. 또한 ‘폭도’로 몰린 가족을 대신해 어머니들은 고문과 폭력에 시달려야 했고, 이는 평생의 후유증으로 남았다. 이와 같은 4·3의 상처는 집단적이고 장기적인 트라우마를 남겼다. 4·3으로 인해 다친 가족들의 병간호 또한 여성들의 주요한 역할이었다. 주변의 도움과 민간요법 등을 활용하여 장애를 입은 가족들의 상처를 치료하였고, 자신도 평생을 4·3의 후유증에 시달리면서도 가족의 트라우마를 지켜보며 돌봐왔다



- 4·3 유족 1세대 여성들은 성인이 되어 결혼한 이후에도 어머니와 며느리 역할뿐만 아니라 친정 가족의 돌봄을 위해 두 배, 세배 더 노력해야 했다. 이들은 친정의 대를 잇기 위해 양자 들이기와 친정 부모 제사는 물론 4·3에 대한 증언과 미등록된 가족 구성원의 희생자 등록 등 친정 가족의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해 노력하였다

■ 생계 노동: 밭일, 물질, 장사, 이주노동

- 4·3으로 인해 마을과 가족의 생계 기반이 파괴된 상황에서 여성들은 자연환경에 기반하여 밭일과 물질을 하였고, 나무를 하여 장에 팔거나 고소리술을 만들어 파는 등 장사를 병행하며 재산을 모아나갔다. 산간마을의 여성들은 보리나 고구마 등의 농사를 주로 했고 해안마을의 여성들은 물질과 밭일을 병행하며 배고픔을 이겨나갔다. 특히, 당시에는 해녀는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가난한 집안 여성들이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4·3으로 집이 불타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해안마을 여성들은 대부분 물질을 할 수밖에 없었다
- 가족과 마을의 경제적 기반이 더욱 열악해진 상황에서, 제주 여성들은 타지역으로 이주 노동을 떠났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제주 여성들의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등 다른 나라로의 이주 노동은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이들은 10대 중후반 정도 나이가 되면 다른 지역의 양장점, 방직공장, 콩나물공장 등 공장 노동자로 일하거나 물질을 했다. 한편, 이 시기 제주 여성의 이주 노동은 가족 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주로 고향에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였다

■ 제주 여성, 가족 그리고 노동

-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주 여성들에게 가족은 힘의 원천이자 희생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제주 여성들에게 '가족'은 '노동'과 분리되지 않은 영역으로, 제주 여성들은 가족을 위해 일했다. 이들의 활동은 매우 진취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측면도 강했다. 당시 제주 여성들에게 '호적'이 차별이자 권리를 의미했던 것처럼, 가족은 여성들이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희망이었지만 권리 없이 생계부양의 의무만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적이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여성들은 자신의 처지와 어려움을 탓하기보다는 환경에 맞서 다양한 삶의 전략을 펼쳐 왔다. 4·3 이후 가족 내 남성 노동력의 부재로 인한 공백이 어머니와 며느리, 딸들의 노동력으로 대체되면서, 살아남은 여성들은 마을 사람들과 연대하며 4·3의 상처를 치유하고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었다. 당시 10세 전후의 어린아이였던 구슬자들은 어머니와 함께 생계부양자이자 돌봄제공자 역할을 하였다. 특히, 제주 여성들의 이주 노동은 고향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으며 여성들에게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이처럼 4·3 재건기 제주 여성들은 어린 시절부터 생계 부양을 위하여 육지와 타국 생활을 거침없이 해냈고, 자신을 믿고 마을 사람들과 연대하며 가족과 마을을 재건해 나갔다. 산업화로 이행되는 단계에서는 전통적인 노동과 시장노동, 비공식노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여 가계 재산을 늘려나갔고 후세대의 교육과 성장에 기여하였다

4. 여성의 삶을 통해 본 제주 4·3의 의미와 과제

- 본 연구는 4·3 희생자 및 유족의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사례의 다수가 여성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시작하였다. 그러나 4·3의 의미와 과제를 모색하는 작업은 4·3의 보상과 명예 회복을 넘어서 미래 제주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제주 여성들의 삶을 통해 4·3의 의미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돌봄, 치유, 공동체의 가치 확산

- 4·3 이후 살아남은 사람들은 삶을 지속해야 했고,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용기를 내어 도움을 준 이웃들의 존재였다. 특히, 여성들은 어려운 이웃의 돌봄과 생계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받았다. 제주 여성들은 마을의 애기 돌보기, 젓동냥 등 어린아이들을 돌보았고, 다친 이웃에게는 상처 치료를 위한 재료를 몰래 주기도 하였으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과 옷 등을 나눠주었다. 여성들 간의 연대는 남성 가족을 잃어버린 여성들에게 더욱 큰 자원이 되어 4·3 이후의 일상을 재구축할 수 있었다
- 이와 같이 제주 여성들은 다양한 경제 활동과 진취성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연대와 돌봄의 가치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폐허가 된 가족과 공동체에 생명을 창조하였고, 평화와 공존의 삶의 가치를 교훈으로 주었다. 이러한 가치는 오늘날 ‘평화, 인권, 공존, 생태의 섬 제주’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따라서 제주 여성들의 삶을 통해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뿐만 아니라 돌봄과 나눔, 공동체의 가치를 4·3의 정신이자 과제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제주 여성들은 이와 같은 중요한 가치들을 혼자 감당하느라 많은 희생을 해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향후 제주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과제 모색과 함께 제주 여성들이 지키고자 했던 삶의 가치를 보편적인 가치로서 함께 나누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 4·3 교육 및 기타 다양한 기념사업과 정책을 통해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제주 4·3과 여성’, ‘제주 여성의 노동과 역사’ 등을 주제로 한 대중 교양강좌 및 문화 및 관광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이상에서 살펴본 4·3 전후 제주 여성들의 삶의 맥락과 가치가 4·3 희생자와 유족에 관한 보상 및 명예 회복 과정에 반영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이 최대한 배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경숙·안미정(2015), 「「제주 여성의 삶 : 일·가족·공동체」 재해석과 재조명」,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고성만(2005), 「제주4·3담론의 형성과 정치적 작용」,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성례·유철인·김은실·김창민·고창훈·김석준(2001), “제주 4·3의 경험과 마을공동체의 변화”, 「한국문화인류학」, 34-1 : 89~137, 한국문화인류학회.
- 김혜숙(1999), 『제주도 가족과 켄당』, 제주대학교 출판부.
- 김효선(2007), “제주사회의 가부장제 드러내기”, 「제주여성, 그 강인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차별 드러내기 - 개인의 일상경험을 중심으로」 자료집, 제주여민회.
- 권귀숙(2011), “‘아방도 없고 허난 밥도 없고’ - 제주 4·3의 여성사”, 「4·3과 역사」, 제주 4·3연구소.
- 박찬식(2010), “한국전쟁과 제주지역 사회의 변화 - 4·3사건과 전쟁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27 : 81-106
- 양시연(2004), “센터의 성과와 과제”,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35년」, 제주여성교육문화센터.
- 이정주(1999), 「제주 ‘호미’마을 여성들의 생애사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 ‘4·3’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재경(2003), 『가족의 이름으로』, 또 하나의 문화.
- 이해응·김준표·고승한·손태주(2021), 「제주지역 남성문화에 대한 기초 연구 : 세대별 성 역할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제주 4·3연구소(2019), 『4·3생활사총서1 - 4·3과 여성, 그 살아낸 날들의 기록』, 도서출판 각 Ltd.
- 제주 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2003), 「제주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선인.
- 제주 4·3희생자유족회(2021), 「제주4·3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부 불일치 실태조사 보고서」.
- 한림화(2015), “「제주 여성의 삶 : 일·가족·공동체」 재해석과 재조명 연구에 부치는 서설”, 「제주 여성 삶의 가치 재조명을 위한 도민토론회 - 제주 여성의 용기, 지혜, 힘」 자료집, 제주여성가족연구원

